

청원서

수 신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조명균 통일부 장관(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총괄간사)
 천해성 통일부 차관(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의제분과장)
제 목 : 남북정상회담의제에 북한인권 포함 청원 및 긴급면담 요청
청원인 : (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별지 첨부
 20개 단체
(통지수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서초동, 메종스튜디오)
 전화 : 02-599-4434, 팩스 : 02-599-4435,
 Email : hanbyun@hanbyun.or.kr

청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청원취지

2018. 4.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아래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 ①북한에 억류중인 김정옥 등 자국민 6명의 석방
- ②정치범 수용소의 해체 문제
- ③강제송환된 북한주민 처벌 중지
- ④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등
- ⑤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
- ⑥이산가족 자유왕래

2. 청원 이유

가. 청원 경위

청와대는 2018. 3. 15. 다음달 4월에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의제분과장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준비위원회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외면한 북핵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과 이를 위한 조속한 임종석 준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 사건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나. 청원인

(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 대표 김태훈)은 2013. 9. 10.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북한 인권개선 및 자유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범한 변호사 단체로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수요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밖에 이 사건 청원을 하는 단체들과, 한변에 청원을 위임한 단체들 명단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다. 피청원기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8. 3. 15. 발족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임종석 준비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번 4월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을 청원합니다.

라. 청원권 행사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호(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기관
-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1. 피해의 구제
-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청원의 심사)

-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북한인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의제가 될 북한인권 문제의 내용

(1) 억류 중인 자국민 6명의 석방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처럼 적어도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붙잡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들 안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납치됐습니다.

김정옥 선교사(54세)는 2013. 10. 8.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갇혀 있습니다. 역시 선교사인 김국기(64세)는 2014년 10월부터, 최춘길(59세)은 2014. 12. 30. 부터 각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구금돼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로서, 이중 고현철의 억류 사실은 2016년 7월 북한이 어린이 유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했습니다(통일뉴스 2017. 10. 8.¹⁾ 한국일보 2017. 6. 20²⁾).

정부는 속히 북한에 이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은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392>

2) <http://www.hankookilbo.com/v/ffecc90be0fe4016a390593df0e6d8a4>

에 억류된 미국인 3의 석방을 북측과 논의하기 시작했고(조선일보 2018. 3. 19), 일본도 납북된 일본인의 석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문제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독재의 수단이자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서 관리소라고 불립니다. 현재 개천 14호, 요덕 15호, 명간 16호, 개천 18호, 청진 25호 등 5개소가 설치되어 8만 내지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계변호사협회(IBA)가 작년 12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나치의 아우슈비치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의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서,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의 종합판이자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범수용소 해체문제는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합니다.

(3) 강제송환된 북한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지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의 인권 지옥을 벗어나 한국으로 오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다가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는 탈북 난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된 처벌 방침에 따라 대부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되고, 교화소(교도소)에 보내지더라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다수 수감자가 오래 못 버티고 굶어서 또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이러한 참혹한 운명을 알기 때문에 대다수 탈북민은 독약을 품고 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참한 탈북 난민들과 먼저 한국에 도착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 가족들의 비명에 우리 사회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중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합니다.

(4) 국군포로 송환 등

2015년 말 기준 6·25 전쟁 국군실종자 8만 2,000여 명 중 약 500여 명의 국

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를 위반하여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 등을 위반하여 가족결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회권규약 및 자유권규약 제2조를 위반하여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구성원의 최소한의 의무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송환 등 구출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납북자 송환 등

6·25 전쟁 기간 납북된 한국국민들의 규모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발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전시납북자는 95,456명이다. 또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인데 귀환 및 탈북 귀환을 제외하면 2015년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는 KAL기 납북 미귀환자 황원 등 11명을 포함하여 516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납북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의 반인도범죄인 강제실종의 피해자들로, 가족결합권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바, 조속한 생사확인 및 송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월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요청했는데(SBS 2018. 3. 18), 우리 납북자 문제도 당연히 거론돼야 합니다.

(6) 이산가족 왕래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은 분단과 6·25 전쟁으로 발생했고, 2016. 12. 31. 기준,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6만 2,631명이고, 70세 이상이 전체 생존자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가족결합권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바, 이벤트성 상봉행사를 지양하고 모든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생사확인, 서신교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 론

지금 우리 사회는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온

통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핵 위기를 대화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에서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종전선언, 평화협정 문제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마땅히 이번 정상회담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북한에 의해 납치·억류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비롯하여 북한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북핵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뿌리가 되는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나아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게시판을 따로 개설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 8. 24. 일반국민은 4대의무가 있지만 공직자는 5대 의무가 있다며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에 설명의 의무가 더 있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³⁾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북한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응당 이 사건 청원인들을 만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청원대상이 되는 인권문제는 북한이 꺼린다는 이유로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쪼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겸 준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어 남북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서류 : 별지

2018. 3. 2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귀중

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5005009&wlog_tag3=naver (2017. 8. 24. 자 서울신문 기사)

[별지]

청원인

- (1) (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인) 김태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 (2)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범진 (인) 박범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1, 10층(공화빌딩, 10층)
- (3) (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 (인) 이미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28 (청량리동) 성일빌딩 2층
- (4) (사)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 (인)
서울 서초구 방배로76, 301호(방배동, 머리재빌딩)
- (5) (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김석우 (인) 김석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0길 12, 대영빌딩 3층
- (6)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인)
서울 종로구 종로66길 20 계명빌딩 901호
- (7) (사) 세이브NK 대표 김범수 (인)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 405호(논현동, 거평타운)
- (8) (사) 6·25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손명화 (인) 손명화
서울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 디오빌 221호
- (9) (사) 피난처 대표 이호택 (인) 이호택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9길35 (상도동 362-47)
- (10) 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 황인철(인) 황인철
경기 부천시 은성로 76번길 55-13(소사본동)
- (11) (사)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인)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81 482호(화곡동, 동양빌딩)
- (12)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인) 강철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 (13) 엔케이워치 대표 안명철 (인) 안명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별지2]

한변에 청원 서명 위임 단체

(1) 나우 대표 지성호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4층 408호(도로명 인사동5길 25)

(2)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허광일

(3)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홍광

(4) 뉴코리아여성연대 대표 이소연

서울 구로구 고척로 98 성민빌딩 3층(구로구 개봉동 63-20)

(5)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81, 482호(화곡동, 동양빌딩)

(6) 정치범 생존자 모임 대표 김영순

(7) 자유통일 문화원 원장 이애란

서울 종로구 낙원동 197-1 경산빌딩 2,3,4층

(8) (사)세이브엔케이 대표 김범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405호(논현동 거평타운)

(9) (사)물망초

서울 서초구 방배로76, 301호(방배동 머리재빌딩)

(10)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최성용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11)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서울 종로구 종로66길 20 계명빌딩 901호